

	규정 대학 중장기 발전계획 수립 및 운영 규정	문서번호	TWP-A708
		제정일자	2023. 02. 28.
		개정일자	2025. 10. 14.
		개정번호	1
		페이지	1/5

작성부서	기획예산처	제정일자	2023. 02. 28.
------	-------	------	---------------

구 분	작 성	검 토			승 인
직 책	담당	교무학생처장	사무처장		총 장
서명					
일자					



규정

대학 중장기 발전계획 수립 및 운영 규정

문서번호	TWP-A708		
제정일자	2023. 02. 28.		
개정일자	2025. 10. 14.		
제정번호	1	페이지	2/5

	규정 대학 중장기 발전계획 수립 및 운영 규정	문서번호	TWP-A708
		제정일자	2023. 02. 28.
		개정일자	2025. 10. 14.
		개정번호	1
		페이지	3/5

제1조(목적) 이 규정은 동원대학교(이하 “우리 대학”이라 한다)의 건학이념, 사명 및 교육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대학 중장기 발전계획(이하 “발전계획”이라 한다)의 수립, 추진, 평가, 개선 및 환류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용어의 정의) 발전계획은 대학의 건학이념, 사명 및 교육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비전, 전략과제, 실행과제, 특성화계획, 성과지표 및 재정 투자계획이 포함된 기본계획을 말한다.

제3조(주관부서) ① 발전계획의 수립, 추진, 평가, 개선 및 환류에 관한 업무는 기획예산처에서 주관한다.

② 주관부서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.

1. 발전계획 수립 및 추진에 관한 업무
2. 발전계획 추진 결과에 대한 평가 업무
3. 발전계획 평가 결과에 따른 개선 및 환류에 관한 업무
4. 기타 발전계획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제반 사항에 관한 업무

제4조(발전계획 수립) ① 발전계획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수립한다.

1. 환경분석(외부환경분석 및 내부여건분석)
2. 구성원 의견 수렴
3. 대학 비전 및 목표
4. 인재상 및 교육목표
5. 전략과제 및 실행사업
6. 비전 및 목표 달성을 위한 연도별 예산이 반영된 재정투자계획
7. 기타 대학 발전에 필요한 사항

② 발전계획은 대학의 대내외 환경을 고려하고 대학 구성원 및 산업체 등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하여 주관부서가 계획을 수립하되 세부 실행사업은 각 행정부서 및 학과가 수립하여 제안할 수 있으며, 주관부서는 제안 내용을 반영한 발전계획서를 수립한다.

③ 발전계획서의 수립을 위하여 별도의 T/F팀을 구성할 수 있으며, 필요시 외부 전문가의 컨설팅을 받을 수 있다.

제5조(발전계획의 추진) ① 부서 및 학과는 발전계획의 체계적인 목표 달성을 위한 전략과 실행과제를 제시하고 연도별 재정 투자계획이 반영된 세부 실행계획을 수립한다.

② 주관부서는 부서 및 학과의 세부 실행계획을 종합하여 기획예산위원회에 보고하고 대학평의원회 심의 및 이사회 심의·의결을 거쳐 확정한다.

	규정 대학 중장기 발전계획 수립 및 운영 규정	문서번호	TWP-A708
		제정일자	2023. 02. 28.
		개정일자	2025. 10. 14.
		개정번호	1
		페이지	4/5

- ③ 주관부서는 발전계획이 확정되면 대내·외(대학구성원, 대학홈페이지, 대학정보공시 등)적으로 공표한다.
- ④ 부서 및 학과는 최종 확정된 발전계획의 연도별 세부 실행계획에 기반하여 업무를 수행하고 예산을 집행한다.

제6조(평가) 발전계획의 평가를 위하여 다음 각 호 사항에 대하여 매년 교육품질관리 및 자체 평가를 시행하고 관련 위원회(교육품질관리위원회, 자체평가위원회) 심의를 거쳐 개선 여부를 결정한다.

1. 연도별 세부실행계획 추진 및 성과지표 달성 결과
2. 예산 계획 대비 집행 결과
3. 이해관계자 교육만족도 조사 결과
4. 기타 발전계획 평가 관련 총장이 부의하는 사항

제7조(발전계획의 개선 및 환류) ① 주관부서는 연도별 추진성과 결과 사항을 개선이 필요한 해당 부서 및 학과의 평가 결과를 통보하고 개선 계획을 반영한 차년도 업무계획을 수립하게 한다.

② 주관부서는 확정된 발전계획이 중요한 대내·외 변동요인으로 세부 실행계획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 발전계획의 일부 수정 사항에 대해 기획예산위원회와 대학평의원회의 심의 거쳐 총장이 확정할 수 있다. 다만, 수정 보완된 발전계획이 주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이사회의 심의·의결을 거쳐 확정한다.

제8조(경비) 대학 발전계획 수립 및 개선을 위한 경비(연구비 등)는 대학 예산으로 한다.

제9조(세부사항) 이 규정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.

부 칙

1. (시행일)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